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98호 2026. 4. 6.(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6-605호)
- 2026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6-611호)
-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6-614호)
-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공고(예천군 공고 제2026-61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호명읍 산합리 일원 도청신도시(1단계) B-1블록 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
예 천 군 수

1. 공람기간 : 2026. 4. 6. ~ 2026. 4. 20. (14일간)
2. 공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3.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대지분할 가능선 신설, 평균층수 변경(22층 → 24층) 등
4. 관련도면 및 조서 : 붙임참고
 - ※ 붙임 결정(변경)도(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견제출 :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공동주택용지 외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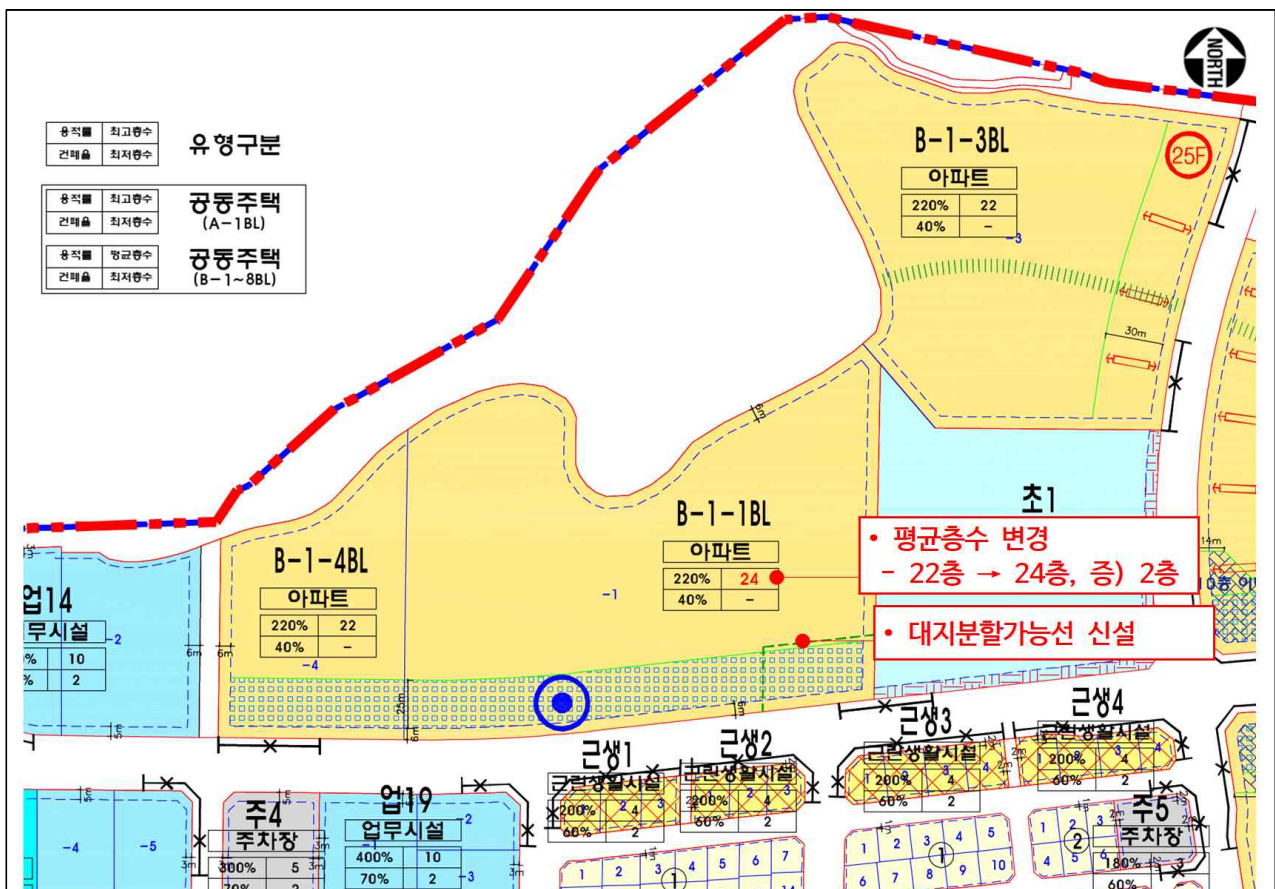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81,865.2	12필지	481,865.2		
B-1	-	82,137.3	1	38,905.1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기정)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변경)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3	31,232.2		
			4	12,000.0		
B-2	-	88,447.7	1	46,020.2		
			2	42,427.5		
B-3	-	79,372.5	1	79,372.5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B-4	-	59,903.4	1	34,252.6		
			2	25,650.8		
B-5	-	26,535.5	1	26,535.5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B-6	-	55,901.2	1	55,901.2		
B-8	-	89,567.6	1	48,917.3		
			2	40,650.3		

5.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공동주택용지 외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교통체계	-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정)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출입을 불허한다. (변경)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출입을 불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별도의 진입도로를 허용할 수 있다.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2026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공고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이웃 간 상생하는
건실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예 천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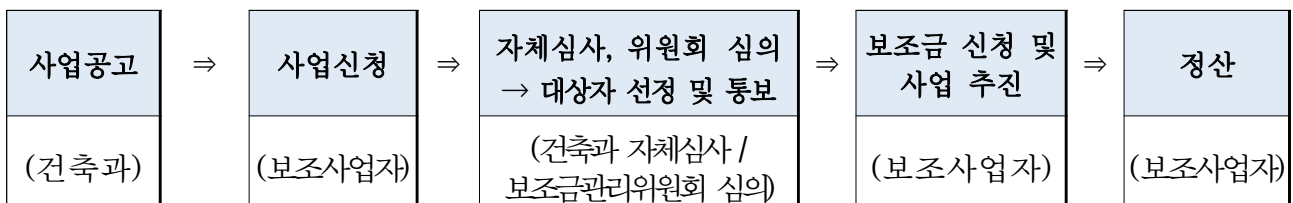
2026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2
- **지원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희망단지 ※ 미신청단지 우선지원
- **예산총액** : 50,000천원
 - 가. 최초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나. 2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다. 3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
 - 라. 4회차 이상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
- ※ 2025년도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 비율 10% 경감
- ※ 단, 1개소 단지 지원 상한액은 5,000천원으로 함
- **사업내용** : 단지 별 희망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유형	프로그램 예시
소통 /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⑤ 아파트 신문 발간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텃밭 가꾸기 ③ 녹색장터 ④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공유 ⑤ 체험활동
교육 / 보육	① 취미교실 ② 반찬품앗이, 이유식 만들기 ③ 자녀교육 ④ 보육 / 공동육아
문화 강좌	① 운동, 건강교실(GX, 헬스, 요가) ② 어학교실(영어, 한문) ③ 음악교실 ④ 교양강좌
기타 활동	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④ 입주민과의 소통의장 운영
혼 합	2개 이상의 프로그램 혼합

○ 추진절차



※ 정산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최우수 단지를 선정하여 차년도 자부담 비율 10%경감
(평가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참고)

2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6. 4. 6.(월) ~ 2026. 4. 30.(목) 18:00 마감
- **신청방법**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 **신청서류**
 - 가.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나.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
 - 라.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 1부.
 - 마.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
-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 수리 및 자부담 방안에 대한 의결 내용 포함
- **참고자료**
 -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 1부.
 - 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 1부.

3 사업 선정

- **선정 절차**
 - 가. 1차 심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건축과 자체 검토
 - 나. 2차 심사: 보조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따른 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 발표** : 선정단지 개별통지(2026. 6~7월 예정)

4 기타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됨
 - 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다.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단지 별 단일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사업 응모를 원칙으로 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별표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

보조비목	편성 기준
- 홍보비 - 인쇄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실비정산 - 예시: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기념물
- 물품구입비 - 사무용품구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실비정산 ※ 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예시: 컴퓨터, TV 등)
- 단기임차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임차 비용 - 실비정산
- 시외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 - 실비 정산 - 예시: 유류비, 주차비, 통행요금, 교통비 - 숙박비: 1인 1박 5만원 기준으로 편성
- 식비 - 간담회비	- 식비: 1인 1식 9천원 이내 편성 - 다과비: 1인 4천원 이내 편성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다과비 또는 주류 구매로는 편성 불가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 증액 가능
- 외래 강사료	- 지급단가: [별표 제2호 서식]참고 - 1인당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월간 지급 강사료가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
- 공연비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이하: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월간 개인에게 지급 되는 금액이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 ※ 공연기획사와 거래시 부가세가 포함된 지급한도금액임
- 시설공사비	- 실비정산 - 예시: 공간 조성, 공연 무대 설치 ※ 행위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건에 한함
- 체험비	- 실비정산 - 예시: 현장학습 입장료

☐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군 관내 사용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금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거나, 관내에서 해당 품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세부 증빙서류는 보조금 교부시 별도 안내

☐ 보조 비목에 없는 항목에 대한 지출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054-650-6943)

강사료 예산 편성 기준

비 목	등 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원)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 본 1 시 간	초과시간	
강 사 비	특급 (전·현 직)	- 장관급, 차관급 - 대학총장(장관, 차관급) - 국회의원 - 광역·기초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장	- 대기업 회장, 공기업 대표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경상북도 사전협의)	300,000	200,000 (매시간)	
	1급 (전·현 직)	- 대학의 교수 - 판·검사 - 지방의회의원 - 언론인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유명 예술인, 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250,000	120,000 (매시간)	
	2급 (전·현 직)	-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업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50,000	80,000 (매시간)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100,000	50,000 (매시간)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0,000	40,000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해당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자		60,000	30,000 (매시간)	

□ 위 강사료 예산 편성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6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함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공모사업명		2026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 업 개 요	신청단지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 업 비	내 역	총 계		보조금		자부담	
		천 원(100%)		천 원(%)		천 원(%)	
연 락 처	성 명 (실무담당자)			주 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AX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장 :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1부. 3.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개 인(단 체)명		회원수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 업 내 용	분 야			
	신 청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장 소		
	총소요사업비	지원신청액		
예 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나. 사 업 량 :

다. 지원근거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2

라. 주요내용 :

4. 기대효과 :

5.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별지 제7호 서식]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바람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변경)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자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 지원	사업 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지원,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자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용	신청 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지원된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첨		- 세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 의결서(사업비 지원 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

신청 단지				사 업 명			
-------	--	--	--	-------	--	--	--

심사 항목	배 점	내 용	상세 배점	평가 점수		
총 계	100					
취지 적합성	25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사업 여부 -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 가능한 양질의 사업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실현 가능성	25	- 응모 프로그램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구체화 및 명확화 여부 - 책정 예산의 타당성 및 현실성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주민 참여성	25	- 입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 여부 - 특정 연령층에 편중된 사업 지양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사업 지속성	25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장기적 및 지속적 규모로 확대 가능한 사업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종합 의견						
지원 금액	신 청 액(천원)			부서 검토액(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수단지 선정 평가표

단 지 명			진행 사업명	
심사 항목	배 점	내 용	상세 배점	평가 점수
총 계	100			
주민 참여성	25	· 입주자등의 참여도 · 참여 유도(단지 내 행사 연계 등) · 전 연령층(아동,노령 등) 참여 내용 여부	높음: 25 보통: 15 낮음: 5	
지역 경제 활성화	30	· 예천군 관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출 비율	75% 이상 : 30 60 ~ 74% : 20 40 ~ 59% : 15 20 ~ 39% : 10 19% 이하 : 5	
보조사업 관리	20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여부	우수 : 20 보통 : 10 미흡 : 0	
공동체 구성 다양성 및 참여성	15	·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 2개 이상 단체 협업	우수 : 15 보통 : 10 미흡 : 5	
입주자 대표회의 이수율	10	·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 기준	80 ~ 100% : 10 70 ~ 79% : 8 60 ~ 69% : 4 51 ~ 59% : 2 50% 이하 : 0	
지역 공동체 형성 기여	+15 (가점)	· 인근 단지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 협업 여부	+15	
사업 진행 민원제기	-30 (감점)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 및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여부	최대 -30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예천읍 남본리 176-80번지 일원 군계획시설(도로)사업(남산공원 앞 도시계획도로(중로3-14호)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8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남산공원 앞 도시계획도로(중로3-14호)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군계획시설) : $A=2,331\text{m}^2$
- 도로(중로3-14호) : $L=201\text{m}$, $B=12\text{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천군수(도시과)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5. 사업시행기간 : 2024. 10. 25. ~ 2026. 3. 30.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공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4 월 6 일

예 천 군 수

1. 모집대상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가. 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소규모 공동주택 (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중복 수급 보조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

2. 모집기간 : 2026.04.06. ~ 2026.04.30. 18:00까지

3. 접 수 처 : 예천군청 2층 건축과 공동주택팀 (방문 전 전화 후 내방 ☎054.650.6352)

4. 지원금액 :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지별 총 사업비의 일부 지원(단, 지원금 상한액은 6,000만원으로 함)

5. 지원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보수
- 상·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개선

-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 공동 화장실의 보수
-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등 유지관리비
-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App)구축 운영
- 외벽도색, 누수에 따른 방수
-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6. 지원결정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른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 부서 검토 후 결정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최종 결정

7. 제출서류

-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 다.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 라.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마. 공법 및 공정표
- 바.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 사. 청렴 이행서약서(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기타 유의사항

-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 및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를 신규 개설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규모 등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은 자기부담금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하며,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고내용 중 이견이 있는 경우 예천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단지 확정 통보는 심의를 통해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개별 통보 예정
 - 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 금액) 1,500만원 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 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2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위허가(신고) 사항일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템e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함으로 관련 시스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안내사항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3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제출(한글파일의 사진대지)

【견본】

사 업 계 획 서

1. 단지현황

- 아파트명 : ○○아파트
- 위 치 : 예천군 읍.면 (도로명주소기입)
- 단지현황 : 동 세대
- 준공일자 : . . .

2. 사 업 명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아파트 ○○시설 보수공사)

3. 사업목적

- ○○○○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시설이 노후 및 파손되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회 ○○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4. 소요예산 (단위 : 원)

구 분 공 종	합 계	보조금(00%)	자부담(00%)	비 고
				부가세 포함

5. 사업기간 : 20 . ~ 20 . (00일간)

붙임 : 내역서, 시공도면, 예금통장사본, 현황사진 등

【견본】

000아파트 입주자 동의서

경상북도(예천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1. 대표자 선정에 대한 동의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000아파트 동 호
- 연 락 처 : 010-

2. 관리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동의

- 00아파트 00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의 00%를 지원 받고 우리 아파트에서 00%를 부담하여 보수함

세대수	1. 대표자 선정 동의결과			2. 관리비용 지원신청 동의결과		
	찬성	반대	동의율	찬성	반대	동의율
세대						

동(세대)							
호수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1. 대표자 선정		2. 관리비용 지원신청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견본】

예정공사비 견적서

※ 주의: **2개 업체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을 첨부하여야 함(부가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견본】

보수대상 현황사진

○○아파트 전경사진

○○시설 노후 사진

【견본】

예정공정표

공 사 명	
공 법	
공 사 비	

공 종	전체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토공									
기초공사									

[별첨]

예천군 공동주택관리비용 규모별 지원금액 기준

총 세대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 비율	지원 상한액	비 고
300세대 미만	90% 이내	6,000만원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80% 이내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70% 이내		
1,000세대 이상	60% 이내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단체)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단체)에 관한 아래의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천군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단체명(성명) :
- ▶ 등록번호(대표자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이용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이후
- ▶ 회원관리
 - 보존이유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 보존기간 : 지방보조금 사업종료 후 5년간

4.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